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5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1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 (안 제3조제1항)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0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

(안 제3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 개발·향상 촉진,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u>3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는 건설근로자 고용 동향을 비롯하여 고용구조 개선, 건설기능인력 양성 계획, 복지증진, 근로조건,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인력수급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¹⁾ 2025년 2월에 2025~2029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5차 계획²⁾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임.

건설업은 경기 변동, 기술 발전, 인력 구조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최근에는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심화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안정 정책을 적시에 수립·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가 다소 장기적이며, 정책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 2025.2.27.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 대책을 보다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인 5년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설산업 환경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변화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정책 분야별 유사한 기본계획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법률에 따라 3년 또는 5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예컨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³⁾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

3)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수립 ‘5년→3년 주기’로…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

보사회 종합계획,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⁶⁾ 등은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⁹⁾ 등에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정책 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 또는 5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근로자 정책의 특수성과 건설산업 환경 변화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1.2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7)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8) 2017.3.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¹⁰⁾에서는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2029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현행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개정 규정이 제6차 기본계획 수립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현행 제5차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계획 기간이 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내용¹¹⁾을 포함한 「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정책의 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11)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도 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안전·환경보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함.

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단위로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역시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900만원(연평균 1,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79	—	-79	79	—	79	16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시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 의 처

02)6788-5535